

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			② 사업자등록번호		
	③ 대표자 성명				④ 생년월일	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			(전화번호:)		
② 과세연도	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			
③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							
계정 과목	구 분	자체 연구개발비				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	
		인건비 및 사회보험료		재료비 등			
		인원	⑥ 금액	건수	⑦ 금액	건수	⑧ 금액
합 계							
계정 과목	구 분	기타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	⑪ 총 계 (⑥+⑦+⑧+⑨+⑩)	
		건수	⑨ 금액	건수	⑩ 금액		
합 계							
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의 계산							
⑫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(=⑪)	⑬ 직전 4년 발생액 (⑭+⑮+⑯+⑰)	⑭ (직전 1년)	⑮ (직전 2년)	⑯ (직전 3년)	⑰ (직전 4년)		
⑱ 직전 4년간 연 평균발생액 (⑬/4)		⑲ 직전 3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⑭+⑮+⑯)/3]		⑳ 직전 2년간 연평균발생액 [(⑮+⑯)/2]			
㉑ 증가발생액 (⑫-⑭)							
④ 공제세액							
해당 연도 총발생 금액 공제	중소기업	㉒ 대상금액(=⑪)	㉓ 공제율			㉔ 공제세액 (㉒×㉓)	
			25%				
	중소기업 유예 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	㉕ 대상금액(=⑪)	㉖ 유예기간 종료연도	㉗ 유예기간 종료 이후 년차	㉘ 공제율	㉙ 공제세액 (㉕×㉘)	
					종료 이후 1-3년차 20% 종료 이후 4-5년차 15%		
	중견기업	㉚ 대상금액(=⑪)	㉛ 공제율			㉜ 공제세액 (㉚×㉛)	
			8%				
일반기업	㉛ 대상금액(=⑪)	공제율			㉟ 공제세액 (㉛×㉞)		
		㉟ 기본율	㊱ 추가	㊲ 계 (㉟+㊱)			
		0%					
증가발생금액 공제 (직전 4년간 연구·인력개발비가 발생 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⑭<⑱ 경우 공제 제외)		㉟ 대상금액(=㉑)	㊳ 공제율		㊴ 공제세액 (㉟×㊳)	*공제율 - 중소기업: 50% - 중견기업: 40% - 대기업: 25%	
			%				
		중소기업 (㉙와 ㊴ 중 선택)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 내 기업 (㉙와 ㊴ 중 선택) 중견기업(㉜와 ㊴ 중 선택) 일반기업(㉟와 ㊴ 중 선택)					

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단서 관련)

= 연구·인력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

구분	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 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
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

구분	인정일 (고시일)	취소일	연구개발 인력							
			계		연구전담요원		연구보조원		기 타	
	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'일반연구·인력개발비'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1. "중소기업"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2.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"⑥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1)·2)(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분까지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1))의 비용을 적습니다.
3. 재료비 등의 "⑦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가목3)·4)·5)의 비용을 적습니다.
4.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의 "⑧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나목의 비용을 적습니다.
5. 기타 연구개발비의 "⑨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을 적습니다.
6. 인력개발비의 "⑩ 금액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제2호의 비용을 적습니다.
7. 공제율의 "㉓ 추가"란: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2분의 1을 곱한 비율과 100분의 2 중 낮은 비율을 적습니다.
8. "⑤, ⑥"의 "구분"란: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9. "⑤ 출연금 등 수령명세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10. "⑥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